
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관련 Q&A

Q1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 독감을 진단 받아 5일간 출근하지 못하고 시설장으로부터 유급병가를 받아 자택에서 안정을 취한 경우,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나요?

- 네.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개정되어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- 따라서,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를 포함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또한 유급병가라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.

※ 관련근거 :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라목

Q2 2018년 5월 31일 이전 7일간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유급병가로 근무시간을 인정받았습니다. 6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유급병가 사유로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?

- 아닙니다. 2018년 6월 1일부터는 유급병가에 한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인정받은 7일을 제외한 23일 범위 내에서 유급병가를 사용한 경우,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.

※ 관련근거 :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라목

Q3 2018년 6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가 골절로 10일간 통원 치료를 위해 유급병가를 받았습니다. 증빙자료로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?

- 병가의 경우, 장기요양기관은 처방전 등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7일 이상

연속하는 장기 병가의 경우에는 진단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.

※ 관련근거 : 세부사항 제12조 제3항 제2호

Q4 직원이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고자 합니다. 건강검진에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나요?

- 네. 2018년 6월 1일부터는 직원이 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3조 제3호에 의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유급에 한해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.
- 따라서, 직원이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검진,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또는 「암관리법」에 따른 암검진 등을 받은 경우, 검진에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.

※ 관련근거 :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2호 마목

Q5 2018년 5월 31일 이전 간호조무사가 공단·지자체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직무 관련 교육에 8시간 참여하였습니다. 6월 1일 이후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직무 관련 교육 참석 시 인정하는 근무시간은 총 몇 시간인가요?

- 2018년 6월 1일부터는 직원이 공단·지자체 주관 직무 관련 교육에 참석하였다면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.
- 다만, 공단·지자체 외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직무 관련 교육의 경우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(조무)사, 물리(작업)치료사, 조리원, 위생원, 보조원(운전사) 직종에 한해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.
- 따라서, 5월 31일 이전 위 직종의 종사자가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직무교육에 참여하였다면, 이미 인정받은 근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.

※ 관련근거 :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3호 가목 13), 다목

Q6

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단 또는 지자체 등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직무교육 관련, 치매전문교육(프로그램관리자 과정 73시간)에만 참여하였다면 이를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나요?

- 아닙니다. 2018년 6월 1일 이후 참여한 치매전문교육의 경우, 공단 주관의 장기요양 직무 관련 교육에 해당되어 전체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, 세부사항 시행 전 참여한 치매전문교육의 경우에는 16시간까지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.

※ 관련근거 :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3호 가목 13)

Q7

노인요양시설 종사자가 인권교육에 참여하고자 합니다.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나요?

- 네.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규정이 2018년 3월 13일 신설되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-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3호 가목 12) 규정에 따라 “기타 타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교육”에 참여한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직원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므로 직원이 법 제35조의3에 따라 인권교육에 참여하였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.

※ 관련근거 :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3호 가목 12)